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목 차>

1. 휴게시설 설치 대상
2.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확대
3.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 등 강화
4. 석면 해체·제거업자의 인력 기준 강화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작성자	이름	*붙임 참조
	총괄 담당부서 (과)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직급	*붙임 참조
	국장	산업안전보건정책관 김철희 산재예방감독정책관 김규석		연락처	*붙임 참조
	총괄과장	손필훈		이메일	*붙임 참조

※ 붙임 : 규제사무별 작성자

1. 휴게시설의 설치 대상 <신설/표준형>

이름	나상명, 유예지
직급	5급, 전문위원
연락처	044-202-8893, 8896

2.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확대 <강화/표준형>

이름	신정욱, 김서환
직급	5.급, 7급
연락처	044-202-8853, 8856

3.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 등 강화 <강화/표준형>

이름	류상훈, 임세종
직급	5급, 전문위원
연락처	044-202-8938, 8942

4. 석면 해체·제거업자의 인력 기준 강화 <강화/표준형>

이름	황규석, 최석원
직급	5급, 7급
연락처	044-202-8871, 8876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휴게시설의 설치 대상			
	2.규제조문	제96조의2			
	3.위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 2(휴게시설의 설치)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2.04.25 ~ 2022.06.07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배경)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1.8.17)으로 휴게시설 설치 의무 신설,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 등 제재대상이 되는 사업주의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li> <li>○ (정부개입 필요성) 제재대상 사업주의 범위(시행령) 마련을 통해 휴게시설 설치의무 이행의 실효성 확보</li> </ul>			
	7.규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게시설 미설치 시 제재 대상이 되는 사업주 범위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li> <li>- 상시 근로자수 10명 이상으로 전화상담원 등 6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li> </ul> </li> </ul>			
	8.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li> <li>○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6개 직종의 근로자가 2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li> <li>* 6개 직종: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및 건물 경비원</li> <li>○ 제재대상 사업장의 근로자</li> </ul>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휴게시설 미설치 시 제재대상이 되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휴게시설 설치의무 이행의 실효성 확보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94,559.88	582,210.67	-487,650.79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차등화적용		
기타	12.일몰설정	해당 없음			

	여부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 없음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적용	85,792.61	167,332.38	-9,861.14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lt;신설&gt;</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b>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b></p> <p>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p> <p>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p> <p><b>법 제175조(과태료)</b></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2의3. 제1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한정한다)</p> <p>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6의2. 제1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p> <p style="text-align: right;">&lt;개정 '21.8.17, 시행 '22.8.18.&gt;</p> </div>	<p>제96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등) ① 법</p> <p>제128조의2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p> <p>1.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p> <p>2.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의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p> <p>가. 전화 상담원(39912)</p> <p>나. 돌봄 서비스 종사원(4211)</p> <p>다. 텔레마케터(5313)</p> <p>라. 배달원(922)</p> <p>마.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941)</p> <p>바. 아파트 경비원(94211) 및 건물 경비원(94212)</p> <p>② 제1항의 상시근로자 수와 공사금액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와 공사금액을 포함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다</p>

현 행	개 정 안
	<p>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 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 배경)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1.8.17.)으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식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22.8.18. 시행)
  - 법 위반 시 제재 대상이 되는 사업주의 범위는 사업의 종류 및 상시 근로자 수 등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 이에 휴게시설 미설치 시 제재 대상이 되는 사업주의 범위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
- (정부개입 필요성) 그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79조)에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없어 이를 강제할 수 없어 규제의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

- '서울대 청소노동자 창문도 없는 휴게실서 사망'(연합뉴스, '19.8),
- '변기 옆 식사' 13억짜리 아파트 경비원(세계일보, '21.7)
- 가게 천막.아스팔트 환경미화원의 '찜통 휴게실'(KBS, '21.7)

- 최소한의 근로자 건강권 확보를 위해 사업주에게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제재대상 사업주의 범위를 정부가 개입하여 정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

- (주요 내용) 해외사례, 산안법상 안전보건관리체제, 실태조사 및 노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제재대상 사업주 범위 규정

-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 한국표준직업분류에 해당하는 6개 직종\*의 근로자를 2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 \* 전화상담원(39912), 돌봄서비스 종사원(4211), 텔레마케터(5313), 배달원(922),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941), 아파트경비원(94211) 및 건물 경비원(94212)
- 사업주 부담 최소화 및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단계적 시행
  - \* 상시 근로자 50명(건설업 50억원) 이상: '22.8.18, 20명(건설업 20억원) 이상: '23.8.18.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 ① 대안의 비교

####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휴게시설 미설치 시 제재대상 사업주의 범위 규정
	내용	-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건설업은 20억원 이상) 사업주 - 전화상담원 등 6개 직종의 근로자를 2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 사업주가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운영도 가능
규제대안2	대안명	휴게시설 미설치 시 모든 사업장을 제재대상 사업주로 규정
	내용	상시 근로자의 수나 공사금액 등과 관계없이 1인 이상 전 규모 사업장을 제재 대상으로 규정

####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해외사례, 산안법상 안전보건관리 체제, 실태조사 결과 등을 참고하고 노사의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제재대상을 정함 다만, 재정적 여건 등이 현실적으로 열악한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등은 제재대상에서 제외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휴게권 차별 소지  제재 대상 규모 미만은 휴게시설에 대한 설치 의무 면제로 인식
규제대안2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휴게권을 확보에 기여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크게 발생  영세 사업주까지 일률적으로 휴게시설 미설치 시 과태료 부과는 과도한 규제

###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조치결과
노동계	○ 상시근로자 1명 이상 모든 사업장(건설공사 1억원 이상) 적용 ○ 장시간 근로 등 취약직종은 제재 대상에 추가	○ 노사단체(노동계 2회, 경영계 3회) 의견수렴(22년), 연구용역과 병행한 이해

경영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건설공사 50억원 이상) 적용, 단계적 시행</li> <li>○ 취약 직종 근로자를 10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li> </ul>	<p style="text-align: center;">관계자의 의견수렴(21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사례, 안전보건관리체제, 실태조사 결과 등을 참고하고 노사의 의견을 일부 반영</li> </ul>
-----	---	---

###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 (규제대안1)

- **(상시근로자수)** 해외사례, 산안법상 안전보건관리체제, 실태조사를 참고하고, 노사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상시 근로자 20명(건설업은 20억원) 이상을 제재대상으로 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수준으로 판단

- (해외사례) 독일은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에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미설치시 과태료를 부과
  - 일본은 남자 50명 이상 또는 여성 30명 이상인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
- (산안법상 안전보건관리체제) 상시 근로자수 20명 이상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의무가 있는 사업장으로 자율적으로 안전보건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 규모로 판단되는 사업장으로 규정
  -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의 공사현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의무가 있어 최소한의 안전보건관리가 가능한 적정 공사 규모로 판단
- (실태조사) 20인 이상 사업장의 93.2%가 휴게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조사되어 제재 대상 수규자의 규제에 대한 순응이 가능하다고 판단
  - \* 중소기업 휴게시설 설치·관리 실태조사(중기중앙회 및 경총 주관, '22.1월)
-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 노동계는 상시근로자 1인(건설업은 1억원) 이상, 경영계는 상시근로자 50인(건설업 50억원) 이상 및 300인 이상부터 단계적 적용하자는 의견으로 참여하게 대립
  - \* (노동계)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휴게권 차별 소지, 제재 대상 규모 미만은 휴게시설에 대한 설치 의무 면제로 인식
  - \* (경영계) 휴게시설 설치공간 확보 곤란, 안전·보건관리자 선임기준 이상 적용 필요,
    - 노사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20인(건설업은 20억원) 이상으로 제재 대상을 정하고, 50인 미만 1년 후 적용('23.8.18. 시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판단

- **(사업의 종류)** 상시 근로자수 10명 이상으로서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큰 6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 사업장을 제재 대상에 포함

\* 전화상담원(39912), 돌봄서비스 종사원(4211), 텔레마케터(5313), 배달원(922),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941), 아파트경비원(94211) 및 건물 경비원(94212)

- 6개 직종은 언론 등에서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높아 휴게시설 설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취약 직종으로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으로 강화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

\* '서울대 청소노동자 창문도 없는 휴게실서 사망'(연합뉴스, '19.8), '변기 옆 식사 아파트 경비원'(세계일보, '21.7), '가계천막아스팔트 환경미화원의 '찜통 휴게실'(KBS, '21.7)

- (단계적 적용) 상시 근로자 50인(건설업 50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경영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22.8.18.) 이후 1년이 지난날부터 적용

\* 상시 근로자 50명(건설업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 사업장: '22.8.18, 상시 근로자 20명(건설업은 공사금액이 20억원) ~ 50명(건설업은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 사업장: '23.8.18.

## □ (규제대안2)

- 상시 근로자 1인(건설업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재대상으로 규정할 경우, 규모별 차별의 소지를 없애 모든 근로자의 휴게권을 확보에 기여하나,
-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의 재정적 부담이 크게 발생하고 법령에 대한 수규자의 규제 순응도가 낮을 것으로 판단

## 3. 규제목표

- 휴게시설 미설치 시 제재대상이 되는 사업주의 범위를 상시 근로자수 등의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여 휴게시설 설치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높여 근로자 건강권 확보

## II.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그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하였으나, 제재 규정이 없어 이행의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
- 이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1.8.17.)으로 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상향, 위반 시 제재 대상 사업주의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시행: '22.8.18.)

- 해외사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관리체제, 실태조사 및 노사단체의 의견을 종합하여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되,
  - 50인 미만 사업장은 준비기간 부여 및 설치비용 정부지원 등을 고려하여 1년 후 적용('23.8.18. 시행)하고,
  - 휴게시설의 설치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각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부담을 완화하도록 규정하는 등
  - 규제 수규자의 순응도를 고려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재대상의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휴게시설 설치를 통한 근로자 건강보호라는 목적과 그 실효성 담보를 위한 수단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 또한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대비 휴게시설 설치를 통한 편익이 비용보다 많음
- 한편, 규제의 영향을 받는 대상은 제재대상 사업주로 특정집단에 집중되지 않으나, 규제의 영향을 받게 되는 노사간의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노사단체의 의견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반영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차등화적용

### ○ 영향평가

####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 경쟁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 상시 근로자 20인(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를 설치·관리 기준 미준수시 제재대상으로 규정하여 중소기업에 대하여 차등화 적용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 해당사항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독일) 10인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일본) 상시근로자 50인(여성 30인) 이상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구분	관련 근거	주요 내용
독일	작업장령	o 10인 이상의 고용인을 가진 기업의 경우 또는 고용인의 건강과 안전이 요구될 경우 기업은 노동자에게 휴게실을 제공해야 함.

		- 휴게실 및 휴게공간의 결여 또는 불충분할 경우에 최대 3,000 유로의 과태료 부과
일본	노동안전위생규칙	○ 상시 50인 이상 또는 상시 여성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는 근로자들이 누워 쉴 수 있는 휴게실 또는 휴게소를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구별해서 마련해야 함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 타법사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국토교통부>)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

###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휴게시설 미설치 시 제재대상 사업주의 범위 규정>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81,539.77백만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2	2022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휴게시설 미설치 시 제재대상 사업주의 범위 규정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소상공인	직접	85,792.61	167,332.38	-81,539.77
	간접	8,767.27	414,878.29	-406,111.02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94,559.88	582,210.67	-487,650.79
기업준비용	-81,539.77	연간균등준비용	-9,861.14

### Ⅲ. 규제 의 실효성

#### 1. 규제 의 순응도

#####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에서 사업주에게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11년부터 이미 의무를 부과했고,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18.7월)'을 통해 지속적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지도해 옴
- 또한 실태조사 결과(22.1월)에서도 20인 이상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 비율은 93.2%로 제재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비율도 높지 않고,

\* 휴게시설 설치율(22년 중기 및 경총조사): 10~20인 78.8% 20~50인 91.7% 50~100인 95.8% 100인 이상 100%

- 피규제자의 규제 준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단계적으로 적용, 준비기간을 부여하여 수규자의 법령 준수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
- 한편,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시행에 맞춰 영세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건설현장 및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 시 재정지원방안도 마련하여 병행할 예정임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을 개정하여 사용항목 확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예산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설치비용 지원 확대

##### ○ 규제 차등화 방안

- 상시 근로자 20인(건설업 20억원)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를 휴게시설 미설치 시 제재대상으로 규정하여 중소기업에 대하여 차등화 적용

####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 행정적 집행가능성

-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사업장 점검·감독 등 산재예방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주의 추가적인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여부 확인은 기존의 조직과 인력을 통해 집행 가능

## ○ 재정적 집행가능성

- 규제 집행을 위한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점검·감독은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노동관서에서 수행하고 있는 통상적인 범위의 업무 이므로 별도의 재정적 요인은 고려할 필요 없음

##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 그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휴게시설 설치토록 의무를 규정하였으나,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 발생
- 이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1.8.17.)으로 쏘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 위반 시 제재 대상 사업주의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시행: '22.8.18.)
- 해외사례 분석 등 연구용역('21년), 휴게시설 설치 현황 실태조사('21~'22년), 노사단체의 의견수렴('22년) 결과를 일부 반영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제재대상 사업주의 범위를 정하는 시행령 마련

### 2. 향후 평가계획

- 규모 및 업종별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는 지원 방안 마련 및 홍보 강화
- 사업장에 대한 각종 안전보건점검·감독을 통해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조치 이행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임

### 3. 종합결론

- 그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 하였으나,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1.8.17.)으로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위반 시 제재 대상 사업주의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 이에 해외사례, 산안법상의 안전보건관리체제, 실태조사 및 노사단체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가장 합리적인 수준인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을 제재대상의 범위에 포함
  - 상시 근로자수 10명 이상으로서 언론 등에서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높아 휴게시설 설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6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 사업장을 제재 대상에 포함
    - \* 전화상담원(39912), 돌봄서비스 종사원(4211), 텔레마케터(5313), 배달원(922),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941), 아파트경비원(94211) 및 건물 경비원(94212)
  - 또한 사업장 규모별 단계적 적용, 사업주들이 공동으로 휴게시설 설치·운영도 가능,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도 고려한 것으로 시행령 개정 필요

**별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2	2022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휴게시설 미설치 시 제재대상 사업주의 범위 규정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85,792.61	167,332.38	-81,539.77
	간접	8,767.27	414,878.29	-406,111.02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94,559.88	582,210.67	-487,650.79
기업순비용		-81,539.77	연간균등순비용	-9,861.14

##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휴게시설 미설치 시 제재대상 사업주의 범위 규정>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직접비용

(정량)영향집단명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 상시 근로자수 10명 이상으로 전화상담원 등 6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활동제목	휴게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직접비용					
비용항목	설비					
비용	85,792,619,327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산식	건축비용 + 비품비용(58,648,224,960+27,144,394,367)					
근거설명	<p><input type="checkbox"/> 비용 추산을 위한 기본 전제</p> <p><b>&lt;1&gt; 휴게시설 건축비용: 58,648,224,960원</b>                  = 휴게시설 설치대상 사업장수×휴게시설의 크기 기준 준수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사업장 비율×1㎡당 건축단가×사업장 규모별 최소면적</p>					
	사업장 규모		설치대상 사업장수	크기 준수 불가 비율(%)	1㎡당 건축 단가(원)	최소 면적 (㎡)
	합계		140,952			58,648,224,960
	① 20-49인(중앙값 35인)		113,256	4.2	468,000	21
	② 6개 직종(10인-19인)		27,696	10.2	468,000	9
						11,898,866,304
<p>* ① 20-49인: 111,256(개소)×4.2%×468,000(원)/㎡×21㎡=46,749,358,656원                  ② 10-19인(6개 직종): 27,696(개소)×10.2%×468,000(원)×9㎡=11,898,866,304원</p>						
<p><b>【산정 근거】</b></p> <p>○ (휴게시설 설치대상 사업장수) 산업재해 현황분석의 규모별 사업장 수(고용노동부, '20년)</p> <p>- (10~19인의 6개 직종 사업장 수) 일부 직종은 업종에 관계없이 종사할 수 있어 정확한 사업장의 수치의 산출이 불가하므로 6개 직종이 주로 종사하는 업종(10~19인)의 사업장 수로 환산하여 집계(사업종류별 산재보험요율 및 사업종류 예시, '22년 고용노동부)</p> <p>* 6개 직종에서 업종으로 전환 시 사업장수는 과대 집계 경향                  (예) 사업서비스업에는 고용알선업, 인력공급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경호 및 탐정, 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 등도 포함</p>						

직종 (한국표준직업분류)	업종 (산업재해현황분석의 업종별 사업장수)
전화상담원, 텔레마케터, 경비원	⇒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사업서비스업
돌봄서비스 종사원	⇒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택배원	⇒ 택배업, 퀵서비스업

○ (휴게시설의 크기 기준 준수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사업장 비율)  
 휴게시설의 최소면적(6㎡) 및 천장고(2.1m)의 확보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사업장 비율(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총, '22년)

\* 10~20인 미만 10.2%, 20~50인 미만 4.2%, 50인 이상은 해당없음

○ (1㎡당 건물건축단가) 건물신축단가표 중 조립식사무실(샌드위치 판넬) 평균 신축비용 468,000원 적용(한국부동산원, '21년)

○ (규모별 휴게시설 최소면적) 사업장 규모별 인원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10명당 최소면적을 6㎡로 적용하여 비례적으로 산출

**<2> 휴게시설 비품비용: 27,144,394,367원**

= 휴게시설 설치대상 사업장수×휴게시설 미설치 비율×비품단가의 합  
 ×사업장 규모별 최소 비품갯수

사업장 규모	사업장 수	미설치 비율(%)	비품단가의 합(원)	비품 세트 갯수	합계(원)
합계	170,028				27,144,394,367
① 20-49인(중앙값 35인)	113,256	8.3	957,960	2	18,010,123,148
② 50-99인(중앙값 75인)	29,076	4.2	957,960	3	3,509,559,265
③ 6개 직종(10인-19인)	27,696	21.2	957,960	1	5,624,711,954

\* ① 20-49인:111,256(개소)×8.3%×957,960(원)×2=18,010,123,148

② 50-299인:29,076(개소)×4.2%×957,960(원)/㎡×3=3,509,559,265

③ 10-19인(6개 직종):27,696(개소)×21.2%×957,960(원)×1=5,624,711,954

**【산정 근거】**

○ (휴게시설 설치대상 사업장수) 산업재해 현황분석의 규모별 사업장 수 (고용노동부, '20년)

- (10~19인의 6개 직종 사업장 수) 일부 직종이 업종에 관계없이 종사할 수 있어 정확한 사업장의 수치의 산출이 불가하므로 6개 직종이 주로 종사하는 업종(10~19인)의 사업장 수로 집계(사업종류별 산재보험요율 및 사업종류 예시, '22년 고용노동부)

\* 6개 직종에서 업종으로 전환 시 사업장수는 과대 집계 경향

(예) 사업서비스업에는 고용알선업, 인력공급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경호 및 탐정, 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 등도 포함

○ (휴게시설 미설치 사업장 비율) 휴게시설 설치·관리실태 조사의 규모별 미설치 사업장 비율 적용(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총, '22년)

\* 100인 이상은 100% 설치로 조사되어 제외, 고용노동부 조사('21년)에서도 100인 이상은 100% 설치된 것으로 조사

○ (비품 단가의 합)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평균 가격 적용('21년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 신설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 연구용역, 고용노동부)

	<p>* 6㎡당 비품소요 비용의 합은 957,960원 적용: ①냉난방기 477,000원+ ② 전기기구 13,000원 + ③ 의자 132,500(26,500원*5개) + ④ 물(1년기준) 335,460원</p> <p>○ (비품 갯수) 사업장 규모별 인원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15명당 최소 면적 9㎡당 1개 세트(냉난방기+전기기구+의자+물)의 비품단가의 합 957,960원을 적용하여 비례적으로 산출</p>
--	---

□ 직접편익

(정량)영향집단명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 상시 근로자수 10명 이상으로 전화상담원 등 6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활동제목	휴게시설 설치에 따른 직접 편익														
편익항목	피로감소에 의한 결근율, 외래 및 입원비용 감소효과, 직무스트레스 감소로 인한 업무상 사고 및 질병 감소효과														
편익	167,332,381,540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산식	①피로감소로 인한 결근율 감소 + ②피로감소로 인한 외래 및 입원비용 감소, + ③직무스트레스 감소로 인한 업무상 사고 감소 + ④직무스트레스 감소로 인한 업무상 질병 감소 (2,764,367,557+105,945,712,810+45,485,404,783+13,136,896,390)														
근거설명	<p>□ 편익 추산을 위한 기본 전제</p> <p>① 피로감소로 인한 결근율 감소 효과: 2,764,367,557원</p> <p>= 2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수(6개 직종 10~19인 포함)×질병 또는 건강 문제 발생 비율×질병 또는 건강문제 발생 비율의 연간 결근일수 ×임금근로자 일 정액급여×휴게시설 미설치 비율×피로 감소효과 (휴게시설 有)×결근율 감소 효과</p> <p>= 11,400,717명×4.9%×3.75일×147,280(원)×13.6%×12.2%×0.54</p> <p>= 2,764,367,557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2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수</th> <th>질병 또는 건강 문제 발생 비율</th> <th>결근일수</th> <th>임금근로자 일 정액급여</th> <th>휴게시설 미설치 비율</th> <th>피로 감소효과 (휴게시설 有)</th> <th>결근율 감소효과</th> </tr> </thead> <tbody> <tr> <td>11,400,717명</td> <td>4.9%</td> <td>3.75일</td> <td>147,280원</td> <td>13.6%</td> <td>12.2%</td> <td>0.54</td> </tr> </tbody> </table>	2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수	질병 또는 건강 문제 발생 비율	결근일수	임금근로자 일 정액급여	휴게시설 미설치 비율	피로 감소효과 (휴게시설 有)	결근율 감소효과	11,400,717명	4.9%	3.75일	147,280원	13.6%	12.2%	0.54
2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수	질병 또는 건강 문제 발생 비율	결근일수	임금근로자 일 정액급여	휴게시설 미설치 비율	피로 감소효과 (휴게시설 有)	결근율 감소효과									
11,400,717명	4.9%	3.75일	147,280원	13.6%	12.2%	0.54									

**【산정 근거】**

- (2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수) 산업재해 현황분석의 규모별 사업장 중 2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수 11,036,699명과 6개 직종(10~19인) 364,018명을 합산하여 총 11,400,717명(고용노동부, '20년)
- (질병 또는 건강문제 비율, 결근일수)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질병 또는 건강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 4.9%, 이로 인한 결근일수 3.75일('17년 근로환경조사, 고용노동부)
- (임금근로자 일 정액급여) 시간당 정액급여는 18,410원으로 일 급여는 147,280원(시간당 급여×8시간)('19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고용노동부)
- (휴게시설 미설치 사업장 비율) 휴게시설 설치·관리실태조사의 13.6% 적용(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총, '22년)
- (휴게시설이 있는 경우 피로감소 효과) 휴게시설이 있는 경우의 피로감소 효과 32.2%(A)에서 휴게시설이 없는 경우의 피로감소 효과 20.0%(B)를 차감한 값 12.2%(A-B)('21년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 신설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 연구용역, 고용노동부)
- (결근율 감소효과) 피로가 낮은 근로자 대비 높은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한 결근율이 1.24~1.84배 증가, 중간 값인 1.54배 적용하되 순수 효과인 0.54배 적용('21년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 신설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 연구용역, 고용노동부)

**② 피로감소로 인한 외래진료 및 입원 비용 감소효과**

**②-1 외래진료비 감소: 89,459,582,726(원)**

$$\begin{aligned}
 &= \text{외래진료비} \times \text{질환의심자 비율} \times \text{2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수 비율} \times \text{휴게} \\
 &\quad \text{시설 미설치 비율} \times \text{피로감소 효과(휴게시설 有)} \times \text{외래진료 감소효과} \\
 &= 38,651,916,448,000(\text{원}) \times 40.72\% \times 60.1\% \times 13.6\% \times 12.2\% \times 0.57 \\
 &= 89,459,582,726(\text{원})
 \end{aligned}$$

외래진료비	질환의심자 비율	2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수 비율	휴게시설 미설치 비율	피로 감소효과 (휴게시설 有)	외래진료 감소 효과
38,651,916,448,000원	40.72%	60.1%	13.6%	12.2%	0.57

**【산정 근거】**

- (외래 진료비) 내원 1일당 외래진료비는 37,569,964명이 이용하여 38,651,916,448,000원('19년 요양기관 종별 진료형태별 요양급여 실적 <직장>), 국민건강보험공단)
- (질환의심자 비율)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결과에서 일반질환 의심(R1) 비율(3,187,245/7,826,288=40.72%)로 산정, 질환의심자는 외래진료를 활용하는 것으로 적용('20년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결과, '21년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 신설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 연구용역, 고용노동부)
- (2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수 비율) 규모별 근로자수 중 20인 이상 및 10~19인(6개 직종)의 근로자수 비율(11,400,717/18,974,513=60.1%) 적용(20년 산업재해 현황분석, 고용노동부)
- (휴게시설 미설치 사업장 비율) 휴게시설 설치·관리실태조사의 13.6% 적용(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총, '22년)
- (휴게시설이 있는 경우 피로감소 효과) 휴게시설이 있는 경우의 피로감소 효과 32.2%(A)에서 휴게시설이 없는 경우의 피로감소 효과 20.0%(B)를 차감한 값 12.2%(A-B)('21년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 신설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 연구용역, 고용노동부)
- (외래 진료 감소효과) 피로가 낮은 근로자 대비 높은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한 외래이용율이 1.19~1.95배 증가, 중간 값인 1.57배 적용하되 순수 효과인 0.57배 적용('21년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 신설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 연구용역, 고용노동부)

**②-2 입원비용 감소효과: 16,486,130,084원**

= 입원진료비×유질환자 비율×2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비율×휴게시설 미설치 사업장 비율×피로감소 효과(휴게시설 有)×입원 감소 효과

= 21,395,822,119,000(원)×17.97%×60.1%×13.6%×12.2%×0.43

= 16,486,130,084원

입원 진료비	유질환자 비율	2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수 비율	휴게시설 미설치 비율	피로 감소효과 (휴게시설 有)	입원 감소 효과
21,395,822,119,000원	17.97%	60.1%	13.6%	12.2%	0.43

**【산정 근거】**

- (입원 진료비) '19년 내원 1일당 입원진료비는 5,335,990명이 이용하여 21,395,822,119,000원('19년 요양기관 종별 진료형태별 요양급여 실적 <직장>), 국민건강보험공단)
- (유질환자 비율)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결과의 유질환자(D) 비율로 산정, 유질환자는 입원진료를 활용하는 것으로 적용('20년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결과, 고용노동부)
- (2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수 비율) 규모별 근로자수 중 20인 이상 및 10~19인(6개 직종)의 근로자수 비율(11,400,717/18,974,513=60.1%) 적용(20년 산업재해 현황분석, 고용노동부)
- (휴게시설 미설치 사업장 비율) 휴게시설 설치·관리실태조사의

13.6% 적용(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총, '22년)

- (휴게시설이 있는 경우 피로감소 효과) 휴게시설이 있는 경우의 피로감소 효과 32.2%(A)에서 휴게시설이 없는 경우의 피로감소 효과 20.0%(B)를 차감한 값 12.2%(A-B)('21년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 신설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 연구용역, 고용노동부)
- (입원 감소효과) 피로가 낮은 근로자 대비 높은 근로자의 질병으로 인한 입원비율은 1.08~1.77배 증가, 중간 값인 1.43배 적용('21년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 신설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 연구용역, 고용노동부)

**③ 직무스트레스 감소로 인한 업무상 사고 감소효과: 45,485,404,783원**

= 산업재해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업무상 사고 비율×2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비율×휴게시설 미설치 사업장 비율×직무스트레스 감소효과(휴게시설 有)×업무상 부상빈도 감소비율

= 27,646,799,000,000(원)×86.3%×60.1%×13.6%×9.8%×0.238

= 45,485,404,783원

산업재해 경제적 손실액	업무상 사고비율	2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수 비율	휴게시설 미설치 비율	직무스트레스 감소효과 (휴게시설 有)	업무상 부상 빈도 감소비율
27,646,799,000,000원	86.3%	60.1%	13.6%	9.8%	0.238

**【산정 근거】**

-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 산업재해 발생으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은 27,646,799,000,000원('20년 산업재해 현황분석, 고용노동부)
- (업무상 사고 비율) '20년 총 요양재해자수 108,379명 중 업무상 질병 요양자 14,816명을 제외한 93,563명으로 86.3%('20년 산업재해 현황분석, 고용노동부)
- (2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수 비율) 규모별 근로자수 중 20인 이상 및 10~19인(6개 직종)의 근로자수 비율(11,400,717/18,974,513=60.1%) 적용(20년 산업재해 현황분석, 고용노동부)
- (휴게시설 미설치 사업장 비율) 휴게시설 설치·관리실태조사의 13.6% 적용(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총, '22년)
- (휴게시설이 있는 경우 직무스트레스 감소효과) 휴게시설이 있는 경우의 직무스트레스 조절 효과 78.5%(A)에서 휴게시설이 없는 경우의 직무스트레스 조절효과 68.7%(B)를 차감한 값 9.8%(A-B)('21년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 신설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 연구용역, 고용노동부)
- (업무상 부상 빈도 감소비율) 직무스트레스 반응으로서 생리적 반응으로 인한 부상빈도 증가는 0.257, 심리적 반응으로 인한 부상빈도 증가는 0.218, 중간 값인 0.238 적용(직무스트레스 반응이 상해와 질병에 미치는 효과 및 사회적 지원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08년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 휴게시설이 있는 경우 직무스트레스가 감소하므로 업무상 부상빈도도 감소

**④ 직무스트레스 감소로 인한 업무상 질병 감소효과: 13,136,896,390원**

= 산업재해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업무상 질병비율×2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비율×휴게시설 미설치 사업장 비율×직무 스트레스 감소효과(휴게시설 有)×업무상 질병감소효과  
 = 27,646,799,000,000(원)×13.7%×9.8%×0.433×60.1%×13.6%  
 = 13,136,896,390(원)

산업재해 경제적 손실	업무상 질병비율	2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수 비율	휴게시설 미설치 비율	직무스트레스 감소효과 (휴게시설 有)	업무상 질병 감소효과
27,646,799,000,000원	13.7%	60.1%	13.6%	9.8%	0.433

**【산정 근거】**

-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 '20년 산업재해 발생으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은 27,646,799,000,000원('20년 산업재해 현황분석, 고용노동부)
- (업무상 질병 비율) '20년 총 요양재해자수 108,379명 중 업무상 질병 요양자 14,816명의 비율은 13.7%('20년 산업재해 현황분석, 고용노동부)
- (2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수 비율) 규모별 근로자수 중 20인 이상 및 10~19인(6개 직종)의 근로자수 비율(11,400,717/18,974,513=60.1%) 적용('20년 산업재해 현황분석, 고용노동부)
- (휴게시설 미설치 사업장 비율) 휴게시설 설치·관리실태조사의 13.6% 적용(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총, '22년)
- (휴게시설이 있는 경우 직무스트레스 감소효과) 휴게시설이 있는 경우의 직무스트레스 조절 효과 78.5%(A)에서 휴게시설이 없는 경우의 직무스트레스 조절효과 68.7%(B)를 차감한 값 9.8%(A-B)('21년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 신설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 연구용역, 고용노동부)
- (업무상 질병 감소효과) 생리적 반응으로 인한 업무상질병 빈도 감소는 0.433배(직무스트레스 반응이 상해와 질병에 미치는 효과 및 사회적 지원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08년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 휴게시설이 있는 경우 직무스트레스가 감소하므로 업무상 질병빈도도 감소

□ 간접비용

(정량)영향집단명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 상시 근로자수 10명 이상으로 전화상담원 등 6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활동제목	휴게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간접비용
비용항목	운영
비용	8,767,278,716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산식	(8,767,278,716)
근거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게시설 청소관리비용: 8,767,278,716원</li> <li>= 설치대상 사업장수×휴게시설 미설치 비율×연간 관리비용</li> </ul>

사업장 규모	사업장수	미설치 비율(%)	연간 관리비용(원)	합계
합계	170,028			8,767,278,716
① 20-49인(중앙값 35인)	113,256	8.3	531,576	4,996,946,231
② 50-99인(중앙값 75인)	29,076	4.2	531,576	649,156,359
③ 6개 직종(10인-19인)	27,696	21.2	531,576	3,121,176,126

\* ① 20-49인:111,256(개소)×8.3%×531,576원=4,996,946,231  
 ② 50-99인:29,076(개소)×4.2%×531,576원=649,156,359  
 ③ 10인-19인(6개 직종):27,696(개소)×21.2%×531,576원=3,121,176,126

**【산정 근거】**

- (휴게시설 설치대상 사업장수) 산업재해 현황분석의 규모별 사업장 수 (고용노동부, '20년)
  - (10~19인의 6개 직종 사업장 수) 일부 직종이 업종에 관계없이 종사할 수 있어 정확한 사업장의 수치의 산출이 불가하므로 6개 직종이 주로 종사하는 업종(10~19인)의 사업장 수로 집계(사업종류별 산재보험요율 및 사업종류 예시, '22년 고용노동부)
  - \* 6개 직종에서 업종으로 전환 시 사업장수는 과대 집계 경향  
(예) 사업서비스업에는 고용알선업, 인력공급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경호 및 탐정, 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 등도 포함

직종 (한국표준직업분류)	업종 (산업재해현황분석의 업종별 사업장수)
전화상담원, 텔레마케터, 경비원	⇒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사업서비스업
돌봄서비스 종사원	⇒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 27,696개소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택배원	⇒ 택배업, 퀵서비스업

- (휴게시설 미설치 사업장 비율) 휴게시설 설치·관리실태 조사의 규모별 미설치 사업장 비율 적용(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총, '22년)
- (연간 청소관리비용) 청소 및 환경미화원 연봉 25,516,000원(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 정보시스템의 '20.6월 기준)의 1일 10분 적용하여 연간 531,576원 적용(관리비용은 모든 면적에 동일 기준 적용)

□ 간접편익

(정량)영향집단명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 상시 근로자수 10명 이상으로 전화상담원 등 6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활동제목	휴게시설 설치에 따른 간접편익
편익항목	프리젠티즘 감소로 인한 생산성 증대효과, 휴게실 설치에 대한 WTP
편익	414,878,296,751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산식	①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출근하여 일을 하는 행위(프리젠티즘)의 감소로 인한 생산성 증대효과 + ② 근로자들이 휴게

실 설치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지불 용의가 있는 비용(WTP, 휴게시설이 없음으로 인한 불편 해소 비용)(36,310,374,719+378,567,922,032)

근거설명

○ 비용 추산을 위한 기본 전제

① 프리젠티즘 감소로 인한 생산성 증대 효과: 36,310,374,719원

↳ 프리젠티즘: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일을 하는 행위

= 2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수×프리젠티즘 비율×연간 프리젠티즘 일수×일급여×휴게시설 미설치 비율

= 11,400,717명×17.2%×1.75일×147,280원×13.6%

= 36,310,374,719(원)

2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수	프리젠티즘 비율	연간 프리젠티즘 일수	임금근로자 일 정액급여	휴게시설 미설치 비율
11,400,717명	17.2%	1.75일	147,280원	13.6%

**【프리젠티즘 감소로 인한 생산성 증대효과 산정 통계자료】**

- (2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수) 규모별 사업장 수 중 2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수 11,036,699명과 6개 직종(10-19인) 364,018명을 합산한 11,400,717명('20년 산업재해현황분석, 고용노동부)
- (프리젠티즘 비율 및 프리젠티즘 연간 일수)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일한 적이 있는 근로자 비율은 17.2%, 이로 인한 연간 근무일수는 1.75일('17년 근로환경조사, 고용노동부)
- (임금근로자 일 정액급여) 시간당 정액급여는 18,410원으로 일 급여는 147,280원(시간당 급여×8시간)('19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고용노동부)
- (휴게시설 미설치 사업장 비율) 휴게시설 설치·관리실태조사의 13.6% 적용(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총, '22년)

② 휴게실 설치에 대한 WTP 산출: 378,567,922,032원

↳ WTP(지불용의접근법) : 휴게시설이 없거나 부족으로 인하여 휴게시설을 설치할 경우 직원들이 필요한 비용을 얼마나 지불하려는가를 파악(직원들이 휴게시설 없음으로 인하여 생기는 불편감을 비용으로 산출)

= 2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수×휴게시설 없을 경우 WTP 평균 비용×휴게시설 미설치 비율

= 11,400,717명×244,159원×13.6%

= 378,567,922,032(원)

2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수	WTP 평균비용	휴게시설 미설치 비율
11,400,717명	244,159원	13.6%

**【WTP 산정 통계자료】**

- **(2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수)** 규모별 사업장 수 중 2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수 11,036,699명과 6개 직종(10-19인) 364,018명을 합산한 11,400,717명('20년 산업재해현황분석, 고용노동부)
- **(WTP)** 근로자들이 휴게실 설치에 지불하려는 용의가 있는 비용으로 244,159원('21년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 신설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 연구용역, 고용노동부)
- **(휴게시설 미설치 사업장 비율)** 휴게시설 설치·관리실태조사의 13.6% 적용(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총, '22년)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확대										
	2.규제조문	[별 표3]										
	3.위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2항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2.04.25 ~ 2022.06.07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사업의 규모, 위험도 등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구분하고 있으나,</li> <li>- 일부 업종은 고위험으로 인해 재해율이 높음에도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 낮아, 고위험 업종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li> <li>* '21.4.22. 평택항에서 발생한 망 이선호 군 사망사고 이후 추진한 '21.7.5. 관계부처 합동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에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조정 포함</li> </ul>										
	7.규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섬유제품 제조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운수 및 창고업'의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 선임하도록 기준 강화</li> </ul>										
	8.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규제자: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섬유제품 제조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운수 및 창고업 사업장의 사업주</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cccccc;"> <th colspan="2">유 형</th> <th colspan="2">인원수 또는 규모</th> </tr> </thead> <tbody> <tr> <td style="width: 25%;">피규제자</td> <td style="width: 25%;"></td> <td style="width: 25%;"></td> <td style="width: 25%;"></td> </tr> </tbody> </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위험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li> </ul>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b>비용</b>	<b>편익</b>	<b>순비용</b>							
		<b>피규제자</b>	13,294.23	89,218.09	-75,923.86							
		<b>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b>										
		<b>주요내용</b>										
	11.영향평가 여부	<b>기술영향평가</b>	<b>경쟁영향평가</b>	<b>중기영향평가</b>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 일몰설정 여부	해당 없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 없음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13,294.23	0	1,607.75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p>				<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p>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
1~2.(생략)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	1명 이상	(생략)	1~2.(현행과 같음)	-----	-----	(현행과 같음)
<신설>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2명 이상	(생략)	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	-----	(현행과 같음)
3.~19.(생략)				4.~20.(현행과 같음)			
<신설>				21.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20.(생략)				22.(현행과 같음)			
21.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23.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신설>				24. 환경정화 및 복원업			
22.~23.(생략)				25.~26.(현행과 같음)			



#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일부 업종은 사고성 재해율, 사고성 사망만인율이 고위험 업종과 동일하게 전체 업종 평균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 달리 적용되고 있으므로\* 해당 업종의 재해 감소를 위해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조정할 필요

\* (규모별 선임) 50인 이상 규모 1명(공통) → ①500인 이상 2명(고위험), ②1,000명이상 2명(저위험)

구분(50인 이상)	사고사망만인율 ('17~'20년)	사고재해율 ('17~'20년)
<b>전체 업종</b>	<b>0.25</b>	<b>0.22</b>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0.39	0.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1.23	0.24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2.21	0.96
환경 정화 및 복원업	0.87	0.82
운수 및 창고업	0.66	0.28

○ 특히, 망 이선희군 사망사고가 발생('21.4.22.)한 **항만하역**(운수 및 창고업)은 작업강도가 높고 재해강도도 높아\*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고위험 업종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관계부처 합동 항만안전 특별대책, '21.7.5.)

\* 지게차·크레인 등 하역운반기계(사망사고 기인물 1위) 사용, 24시간 교대근무 등 업무 환경이 열악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 ① 대안의 비교

#### o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현행유지(안)
	내용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인 고위험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 선임
규제대안1	대안명	고위험 업종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강화
	내용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고위험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 선임
규제대안2	대안명	
	내용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고위험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 비용 미발생	고위험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 어려움
규제대안1	고위험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	고위험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 비용 발생
규제대안2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운수 및 창고업 등 사업주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 수렴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사고재해율,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업종, 규모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
  - 산재발생 빈도와 강도가 높은 업종(섬유제품 제조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운수 및 창고업)으로서 규모가 상당(상시근로자 500명 이상)한 경우
  - 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 선임하도록 규제를 강화하여 재해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규제대안1을 선택

3. 규제목표

- 고위험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산재발생 빈도와 강도가 높은 업종(섬유제품 제조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운수 및 창고업)에서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하여 산업재해예방에 집중할 인력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 규제를 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상인 섬유제품 제조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정화 및 복원업, 운수 및 창고업으로 한정하여 적용하므로 그 수단이 비례적으로 타당함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 영향평가

####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 경쟁영향평가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선임 기준을 적용하므로 피규제자간의 경쟁요인은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 중기영향평가

해당 없음

○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장기적으로 지속되어야 할 규제이므로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신기술 서비스·제품과 관련된 규제가 아니므로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독일) 사업장 업종별 위험도,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투입해야 하는 연간 안전관리 업무 시간을 규정

구분	그룹 1	그룹 2	그룹 3
근로시간 (시간/연·명)	2.5	1.5	0.5
사업분류 (예시)	임업, 벌목, 석탄, 갈탄, 석유 추출, 천연 가스의 추출, 광석 철광석 광산, 비철 금속, 건물 건설, 철도 건설, 교량 및 터널 건설, 파운드리 제조, 콘크리트 생산 등	혼합농업, 수상운송, 자동차의 유지 보수 및 수리, 가구제조, 악기제조,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 도로 청소, 공작기계의 제조, 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 제조	도매 및 상품중개업, 출판업, 음식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교육서비스업, 건물의 일반 청소, 자동차 및 엔진 제조, 신발의 제조 등

\* 섬유제품 제조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운수 및 창고업은 **그룹 2에 해당**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 타법사례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등에서 특정 설비를 보유한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

##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고위험 업종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강화>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13,294.23백만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2	2022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고위험 업종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강화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13,294.23		13,294.23
	간접		89,218.09	-89,218.09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13,294.23	89,218.09	-75,923.86
기업순비용		13,294.23	연간균등순비용	1,607.75

##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상시근로자수 500명 이상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인해 안전관리자 선임 수준을 자체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가 다수 발생하는 상황에서 안전관리 개선을 위해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수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2. 규제 집행가능성

### ○ 행정적 집행가능성

사업장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노사누리 전산자료를 통해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확인이 가능하므로 규제 집행에 특별한 어려움 없음

### ○ 재정적 집행가능성

해당없음

##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 관계부처 합동 항만안전 특별대책('21.7.5.)
- 안전관리자 등 선임기준 강화에 관한 연구('21.9월~'21.12월)

### 2. 향후 평가계획

- 규제 적용 대상 사업장에 대해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지도

### 3. 종합결론

- 섬유제품 제조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운수 및 창고업의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으로 상시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관리 활동 강화

**별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2	2022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고위험 업종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강화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13,294.23		13,294.23
	간접		89,218.09	-89,218.09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13,294.23	89,218.09	-75,923.86
기업순비용		13,294.23	연간균등순비용	1,607.75

##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 <규제대안1 : 고위험 업종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강화>

####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량)영향집단명	섬유제품 제조업, 운수 및 창고업 사업장 등													
활동제목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													
비용항목	노동													
비용	13,294,230,607													
일시적/반복적	반복적/연간균등													
산식	안전관리자 1명 추가 선임 X 연간 인건비(원) X 대상 사업장 수(38280000*42)													
근거설명	<p>○ (사업체)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사업체 수(2019년 기준)에 따라 근로자 수 규모별로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 대상 사업체 수 파악</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분(500명 이상 1,000명 미만)</th> <th style="text-align: center;">사업장수(개소)</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td> <td style="text-align: center;">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td> <td style="text-align: center;">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환경 정화 및 복원업</td> <td style="text-align: center;">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운수 및 창고업</td> <td style="text-align: center;">41</td> </tr> </tbody> </table> <p>○ (인건비) 2021년 국세청에서 발표한 1인당 평균 연봉 38,280,000원으로 계산 → 42명 × 38,280,000원 = 1,607,760,000원</p>		구분(500명 이상 1,000명 미만)	사업장수(개소)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1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0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0	환경 정화 및 복원업	0	운수 및 창고업	41
구분(500명 이상 1,000명 미만)	사업장수(개소)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1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0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0													
환경 정화 및 복원업	0													
운수 및 창고업	41													

##### 간접편익

(정량)영향집단명	섬유제품 제조업, 운수 및 창고업 사업장 등	
활동제목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	
편익항목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을 통한 산업재해 감소	
편익	89,218,099,556	
일시적/반복적	반복적/연간균등	
산식	1인당 산재보상평균지급금액 X 재해자수 감소 X 5(하인리히직·간접손실액 산식 적용)(55332000*39*5)	
근거설명	<p>○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에 따라 피규제 사업장의 산업재해 감소효과가 기대</p> <p>- 산업재해 감소에 따른 근로시간 손실, 기계파손 등의 물적</p>	

손실, 작업중지에 따른 생산량 손실, 재해발생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보상 등 기업의 손실비용의 절감을 편익으로 산정

**【산식】**

○ 1인당 산재보상평균지급금액 × 재해자수 감소 × 5  
= 55,332천원 × 39명 × 5(하인리히 산식 적용 직·간접손실액)  
= 10,789,740,000원

※ 2020년 산재보험급여 지급현황, 산업재해 현황분석 자료에 따라 산출

1) 1인당 산재보상평균지급금액 = 55,332천원(=A/B)\*

\* 2020년도 산재보험급여 지급액 = 5,996,819,000천원(A)  
2020년도 재해자수 = 108,379명(B)

2) 2020년 근로자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운수 및 창고업 등의 재해자 수는 193명이며, 안전관리자 선임에 따른 산업재해 감소율은 20.6%로, 재해자 수 39명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확대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2)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 등 강화								
	2.규제조문	[별표 18]								
	3.위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2.04.25 ~ 2022.06.10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input type="checkbox"/>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22.1.27.~)은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관리체계 구축·이행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은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점검, 이를 위한 예산 편성·집행 등 준수 의무를 규정</li> <li>→ 기술지도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을 경영책임자 등에게도 통보 필요</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기술지도 수행기준 일부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급인이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하 지도기관) 권고를 미이행한 경우 조치사항, 계약체결 후 전산시스템 입력 의무 등 부재</li> <li>→ 지도기관의 의무사항 등을 보완·정비</li> </ul> </li> </ul>								
	7.규제내용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기준 변경(별표18) 기술지도 실시 후 결과보고서를 건설현장 본사 경영책임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기술지도 계약 및 수행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규정								
	8.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사업주 및 종사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유 형</th> <th>인원수 또는 규모</th> </tr> </thead> <tbody> <tr> <td>피규제자</td> <td>산업안전보건법 상 민간전문기관</td> <td>약 200개소</td> </tr> </tbody> </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산업안전보건법 상 민간전문기관	약 200개소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산업안전보건법 상 민간전문기관	약 200개소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input type="checkbox"/> 본사 경영책임자의 산재예방 조치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급인이 소속한 본사 경영책임자에게도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송부하도록 하여 본사 차원의 산재예방 조치 유도</li> </ul> <input type="checkbox"/> 기술지도 계약 및 수행방법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지도 참여 주체별(발주자, 도급인, 지도기관) 계약 및 지도수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기술지도의 효과성 제고</li> </ul>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 없음				
	13.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 없음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0	0	0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8]  <u>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제60조 관련)</u></p> <p>1. <u>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대상 분야</u>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u>법                      제73조제1항에 따라</u> 건설공사도급                      인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도(이하                      “기술지도”라 한다)는 공사의 종류                      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지도 분야로                      구분한다.                      가.~나. (생략)</p> <p>2. 기술지도계약</p> <p>가. <u>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                      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건설공사                      도급인은 공사 착공 전날까지 고                      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u></p> <p>나. <u>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기                      술지도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                      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                      템을 통해 발급한 계약서를 사용</u></p>	<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8]  <u>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제60조 관련)</u></p> <p>1. -----                      -----                      ----- <u>법 제                      73조제1항 및 시행령 제59조에 따                      라</u> -----                      -----                      -----.</p> <p>가.~나. (현행과 같음)</p> <p>2. -----</p> <p>가. <u>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                      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                      급인은 제외한다)은</u> -----                      ----- <u>체결해야                      하며,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                      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발급한                      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u></p> <p>나. <u>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한 건설공                      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                      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u></p>

현 행	개 정 안
<p><u>해야 한다.</u></p> <p>다. <u>건설공사발주자는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게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u></p> <p>라. <u>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도급인이 기술지도계약을 늦게 체결하여 기술지도의 대가(代價)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u></p> <p>3. 기술지도의 수행방법</p> <p>가. (생략)</p> <p>나. 기술지도 한계 및 기술지도 지역</p> <p>1) (생략)</p> <p>2)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p>	<p><u>제외한다)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건설업체명, 공사명 등 기술지도 계약에 관한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u></p> <p>다. <u>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건설공사도급인이 해당 건설현장에 가목에 따른 증명서류를 갖추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u></p> <p>&lt; 삭제 &gt;</p> <p>3. -----</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p> <p>1) (현행과 같음)</p> <p>2) -----</p>

현 행	개 정 안
<p>기술지도 지역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u>지방 고용노동청 및 지방고용노동청의 소속 사무소</u> 관할지역으로 한다.</p>	<p>----- ----- <u>지방 고용노동관서의</u> ----- -----.</p>
<p>4. 기술지도 업무의 내용</p>	<p>4. -----</p>
<p>가. 기술지도 범위 및 준수 의무</p>	<p>가. -----</p>
<p>1) <u>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할 때에는 공사의 종류, 공사 규모, 담당 사업장 수 등을 고려하여 담당 요원을 지정해야 하고, 담당 요원은 해당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해야 한다.</u></p>	<p>1) ----- ----- 「<u>산업안전보건법</u>」, 「<u>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u>」 등에 따라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으며, <u>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권고를 받은 건설공사도급인은</u> <u>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p>
<p>2) <u>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해당 사업주에게 권고를 할 때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기술에 관한 표준 등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u></p>	<p>2) ----- <u>건설공사도급인의 권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도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건설공사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p>
<p>3) <u>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개선 권고를 받은 사업주는 그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u></p>	<p>3) -----은 기술지도 담당자에게 건설업에서 주로 발생하는 사망사고의</p>

현 행	개 정 안
<p data-bbox="204 495 395 539">&lt; 신 설 &gt;</p> <p data-bbox="188 826 632 871">나. 기술지도 결과의 기록</p> <p data-bbox="204 893 794 1408">1) <u>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하고 기술지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 관계자의 확인을 받은 후 해당 사업주에게 발급하고 기술지도를 한 날 부터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u></p> <p data-bbox="204 1431 794 1812">2) <u>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공사 종료 시 건설공사발주자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u></p> <p data-bbox="204 1834 395 1879">&lt; 신 설 &gt;</p>	<p data-bbox="890 230 1433 477"><u>유형과 사고유형별 예방대책, 최근 사망사고 사례 등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u></p> <p data-bbox="858 499 1433 813">4) <u>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할 때에는 공사의 종류, 공사 규모, 담당 사업장 수 등을 고려하여 기술지도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u></p> <p data-bbox="842 835 1297 880">나. -----의 관리</p> <p data-bbox="858 902 1433 1216">1) ----- <u>기술지도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기술지도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u></p> <p data-bbox="858 1431 1433 1744">2) ----- <u>기술지도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해당 건설공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u></p> <p data-bbox="858 1834 1433 2080">3) <u>건설공사의 공사금액이 50억 이상인 경우 건설공사도급인이 속한 회사의 경영책임자 등에게 분기 1회 이상 결과보고서를 송</u></p>

현 행	개 정 안
<p data-bbox="204 295 395 338">&lt; 신 설 &gt;</p> <p data-bbox="165 896 794 1267">5. 기술지도 관련 서류의 보존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계약서,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그 밖에 기술지도업무 수행에 관한 서류를 기술지도가 끝난 후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p>	<p data-bbox="890 232 1139 275">부하여야 한다</p> <p data-bbox="858 295 1430 875">4) <u>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공사 종료 시 건설공사발주자와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에 따른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u></p> <p data-bbox="820 896 1430 1267">5. ----- ----- ----- ----- -----계약 종료 일로부터 -----.</p>

# I. 규제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22.1.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관리체계 구축·이행 등 안전보건확보 의무가 부과됨
- 이에, 전담안전관리자가 없는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 건설현장의 산재예방 지도조치를 실시하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하 지도기관)이 해당 건설현장에 대한 지도결과를 경영책임자에게 통보할 필요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 ① 대안의 비교

#### ○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현행유지
	내용	지도기관이 현장에 대한 지도실시 후 현장에만 결과통보하고 전산입력 기술지도의 구체적인 계약 및 지도 절차 미수립
규제대안1	대안명	기술지도 명확화
	내용	지도결과를 사업장 소속 본사 경영책임자에게도 송부 기술지도의 구체적인 계약 및 지도 절차 등 마령
규제대안2	대안명	
	내용	

####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해당없음	중소형 건설현장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체계이행 어려움 지도기관의 정량화된 지도절차가 없어 기관별 지도수준 차이발생
규제대안1	중소건설현장 경영책임자의 적극적인 중대재해처벌법 이행가능	

	지도기관의 체계적인 지도요건 마련으로 지도품질 강화	
규제대안2		

##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지도기관	'22.3.4 서울 지도기관 간담회	지도결과 본사 통보 및 지도 절차 수립제도 신설안내	

##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전담 안전관리자가 없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이 어려운 50억 이상 120억 중소건설현장은 실질적인 산재예방조치를 실시하는 지도기관의 지도결과를 경영책임자가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으며,
- 중소건설현장의 산재예방 효과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체계가 정립되지 않은 지도기관의 지도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

### 3. 규제목표

- 공사금액 50억 이상 120억 미만 중소 건설현장의 산재예방효과 증대

## II.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중소건설현장의 산재예방을 위해서는 기존에 해당 규모현장에 대한 지도를 실시하는 지도기관의 구체적인 지도절차 규율이 필요하고
-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주체인 본사 경영책임자의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조치를 위해서는 현장의 지도결과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므로 해당 규제의 목적 및 수단간 비례적 타당성은 충분함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 영향평가

####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 경쟁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에 해당하지 않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없음

#### - 중기영향평가

현재 운영중인 지도기관의 시루지도 제도에 대한 명확한 운영기을 보완하고, 지도결과를 본사에 추가로 공유하는 내용에 한정된 규제 로 중기영향평가에 해당하지 않음

### ○ 기타 고려사항

####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현재 운영중인 지도기관의 산재예방 지도의 구체적 절차 등을 규정하 고, 작성한 지도결과를 단순히 본사에 통보하는 내용으로 시장유인적 규제와 관계없음

- 일몰설정 여부

o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하는 내용으로 일몰설정 대상아님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지도기관의 기술지도와 관련한 유사제도는 해외에 미존재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	-	-

o 타법사례

- 유사사례 부존재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기술지도 명확화>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2	2022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기술지도 명확화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의 대부분은 현재 기술지도 집행과정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이며
- 본사 및 정부에 통보하는 사안은 실제 발생하는 비용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 행정적 집행가능성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실시하는 지도의 구체적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행정적 집행여부와는 관계없음

##### ○ 재정적 집행가능성

- 별도의 재정이 투입되지 않는 사안으로 해당사항 없음

###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집행가능여부에 대해 확인한 바 있으며,
- 해당 지도기관의 행정적 업무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규제에 해당되므로 규제 이행의 집행 가능성은 충분함

## 2. 향후 평가계획

- 매년 지도기관의 우수 기술지도 사안 등을 고려한 평가를 실시중에 있음

## 3. 종합결론

- 단순히 건설현장 단위로 실시하고 건설현장 사업주에게만 제공되던 지도기관의 기술지도 결과를 본사 경영책임자 등에게도 공유하여 본사차원의 산재예방 조치를 유도하고
- 기술지도 참여주체별(발주자, 도급인, 지도기관) 계약 및 지도수행 방법을 명확히 하여 기술지도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은
- 공사금액 1억 이상 120억원 미만 중소건설현장의 산재예방에 도움이 되며, 지도기관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별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2	2022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기술지도 명확화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

##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 <규제대안1 : 기술지도 명확화>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간접비용

(정성)영향집단명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활동제목	지도결과 본사 경영책임자 통보 및 지도방법의 구체적 기준 명확화
비용항목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운영활동 명확화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p>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결과 본사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도 시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본사로 통보하는 경우로 비용 발생은 우편물 발송비용 정도로 적은 규제비용이 추가되며 E-Mail 활용 시 직접적인 우편비용도 발생하지 않음</li> <li>- 또한, 기관별로 수주하는 지도계약 수가 달라 구체적 발생비용 추산에 어려움</li> </ul> <p>2. 건설공사도급인이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및 건설공사발주자에게 통보할 의무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미이행 사업장을 고용노동부 및 건설공사발주자에게 통보하는 행정적 비용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음</li> </ul> <p>* SNS, E-mail 등 사용 시 실제 발생비용은 크지않음</p> <p>3.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담당자가 최근 사망사고사례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실시할 의무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도 기술지도기관은 매15일마다 지도를 실시하면서 기본적인 재해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구체적 사고사례 등은 SNS를 통해 매 사고발생 시 마다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어 실제 규제비용은 크지않을 것으로 예상</li> </ul> <p>4.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요원이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해당 공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확인받을 의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기준(시행령 별표18 제4호제나목1))에서 이미 기술지도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관계자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li> </ul>

	<p>5. 공사금액 50억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공사도급인이 속한 회사의 경영책임자 등에게 분기 1회 이상 결과보고서를 송부할 의무</p> <p>- 기술지도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건설공사도급인 소속 본사에 우편 등으로 송부하는 비용정도만 발생하며, E-mail 등을 활용 시에는 E-mail 작성에 따른 행정적 소요 외에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p>
--	---

② 피규제 일반국민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건설공사 근로자
활동제목	산재예방 효과 증대에 따른 편익발생
편익항목	산재발생으로 인한 근로손실 등 편익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감소함에 따라 치료 등에 따른 근로손실일수 감소 등 편익발생

③ 피규제 이외 기업소상공인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건설공사도급인
활동제목	산재 감소에 따른 편익
편익항목	산재감소로 인한 편익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산재발생가능성이 감소함에 따라 산재발생 시 발생이 예상되는 각종 규제(사법처리, 과태료, 작업중지)의 집행가능성 감소

④ 정부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정부
활동제목	산재예방에 따른 편익
편익항목	산재보상보험금 등 산재비용 집행 감소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산재발생 가능성 감소로 정부의 산재보험금 지출 감소 등 편익발생

##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 기준 강화							
	2.규제조문	[별표 28]							
	3.위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제1항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2.04.25 ~ 2022.06.07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주 학동 붕괴사고('21.6월)와 관련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이하 '석면해체작업')의 전문성 및 부실 작업이 드러나 이에 대한 개선 요구 발생</li> <li>○ 현재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전문인력 없이도 석면해체·제거업 등록이 가능하여 무분별한 등록이 만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석면해체 작업 건수는 '10년 1만 4천 건 대비 '20년 2만 건으로 1.4배 증가한데 반하여 노동부에 등록된 석면해체업체는 '10년 1,557개에서 '20년 3,717개로 2.4배 증가</li> <li>- 이에 따른 시장 과포화로 업체 수 대비 작업건수 감소('10년 9.0 건/개소 → '20년 5.5건/개소)로 과당경쟁(저가수주)이 야기되어 부실 작업 발생</li> </ul> </li> </ul>							
	7.규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석면해체업의 인력기준은 ①자격자 1명과 ②경력자 1명을 전담자로 두도록 하고 있으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자격자는 토목·건축 분야 기술자 또는 환경안전보건 분야 자격자 중에서 1명 이상을 전담자로 두고</li> <li>- ②경력자는 공업계고 이상의 학력에 토목·건축 분야 2년 이상 실무 경력자 1명 이상을 전담자로 두도록 하고 있음</li> </ul> </li> <li>○ 이에 대하여 석면해체작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자격자는 환경안전보건 분야 자격자 1명 이상으로 하고</li> <li>- ②경력자는 '토목건축 분야 자격자' 또는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1명 이상으로 변경 하고자 함</li> </ul> </li> </ul> <p>* 현행 '공업계' 고등학교 졸업 요건이 특별한 산업보건 전문성을 갖추는데 특별한 의미가 없음으로 실무경력자로 규제 완화</p> <p>※ (유예 사항) 단, 현재 나, 다 인력만으로 석면해체업체 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인력이 고용 중인 기간에 한해서는 개정안 인력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적용례 부여</p>							
	8.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석면해체제거업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thead> <tr> <th colspan="2">유 형</th> <th>인원수 또는 규모</th> </tr> </thead> <tbody> <tr> <td>피규제자</td> <td>석면해체제거업자</td> <td>3,858개사</td> </tr> </tbody> </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석면해체제거업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석면해체제거업자	3,858개사							
9.도입목표 및	○ 산업안전보건 자격자를 전담자로 두도록 하여 석면해체 작업의 전								

	<b>기대 효과</b>	문성을 제고하여 석면해체 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건강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b>규제의 적정성</b>	<b>10.비용편익분석</b> (단위:백만원)		<b>비용</b>	<b>편익</b>	<b>순비용</b>
		<b>피규제자</b>			
		<b>피규제자 이외</b>			
		<b>정성분석</b>			
	<b>주요내용</b>				
<b>11.영향평가 여부</b>	<b>기술영향평가</b>	<b>경쟁영향평가</b>		<b>중기영향평가</b>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b>기타</b>	<b>12.일몰설정 여부</b>	해당 없음			
	<b>13.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b>	해당 없음			
	<b>14.비용관리제</b> (단위:백만원)	<b>적용여부</b>	<b>비용</b>	<b>편익</b>	<b>연간균등순비용</b>
미적용		0	0	0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8]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제92조 관련)</p> <p>1. 인력기준</p> <p>가. <u>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후 석면해체·제거작업 방법, 보호구 착용 방법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이하 “석면해체·제거 관리자과정 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고 석면해체·제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 1명 이상</u></p> <p>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의 기술자격</p> <p>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p> <p>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했거나 토목·건축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후 석면해체·제거 관리자과정 교육을 이수하고 석면해체·제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 1명 이상</p>	<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8]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제92조 관련)</p> <p>1. 인력기준</p> <p>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                      -----                      -----</p> <p align="center">&lt;삭 제&gt;</p> <p align="center">&lt;삭 제&gt;</p> <p>나. <u>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후 석면해체·제거 관리자과정 교육을 이수하고 석면해체·제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 1명 이상</u></p> <p>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건설기술인</p> <p>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p>

현 행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 분야의 기술자격</li> <li>3) 토목·건축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li> </ul>

#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 추진 배경

- 광주 학동 붕괴사고('21.6월)와 관련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이하 '석면해체작업')의 전문성 및 부실 작업이 드러나 이에 대한 개선 요구 발생

\* ▶ '21.6.24. 임이자 의원(환경노동위원회 中), “광주 학동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석면 페슬레이트로 인해 노동자, 광주 시민 건강 우려”

\* ▶ '21.6.30. 강은미 의원, 광주 사고로 본 재건축·재개발 문제와 안전사회를 위한 토론회 中 “다단계로 내려가면서 공사 비용 삭감으로 인한 안전조치 미흡 등이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적된다.”

- (문제점) 현재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전문인력 없이도 석면해체업 등록이 가능하여 석면해체업체의 무분별한 등록이 만연

- 석면해체 작업 건수는 '10년 1만4천건 대비 '20년 2만건으로 1.4배 증가한데 반하여 노동부에 등록된 석면해체업체는 '10년 1,557개에서 '20년 3,717개로 2.4배 증가

- 이에 따른 시장 과포화로 업체 수 대비 작업건수 감소('10년 9.0건/개소 → '20년 5.5건/개소)로 과당경쟁(저가수주)\*이 야기되어 부실 작업 발생

\* 관급공사(학교석면해체 등) 4~6만원/m<sup>2</sup>, 민간공사 2만원/m<sup>2</sup> 저가수주 경향 ('21.8.20. 간담회)

### □ 개정 필요성

- 현행 전담자 자격 기준에 산업안전보건 또는 건축·토목 분야 자격자 중 1인 이상이면 가능하나,

- 건축·토목 분야 자격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전문성이 미흡하여

- 석면해체제거 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자격자 중 1인 이상으로 인력기준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음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 ① 대안의 비교

#### o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석면해체제거업자 관리 감독 강화
	내용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석면해체제거 작업중 안전보건 관리기준을 준수하는지 관리감독 강화
규제대안1	대안명	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 요건 강화
	내용	- ① '산업안전보건 자격자' 1명 이상을 석면해체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 ② '토목건축 분야 자격자' 또는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1명 이상을 또한 석면해체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
규제대안2	대안명	토목건축분야 자격자의 석면해체제거 관리자 과정 교육 강화(기존 18시간→변경 26시간)
	내용	- 토목·건축분야 자격자에 대한 석면해체·제거 관리자 과정의 교육 시간 및 교육 내용을 강화

####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규제 최소화	석면해체업체의 전문성 강화로 이어지지 않아 효과 불확실 문제 발생 방지를 위한 감독 인력 소요 많음
규제대안1	석면해체업체에 산업안전보건 전문가를 두어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안전성과 근로자 건강보호 강화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채용에 따른 절차상 번거로움 발생
규제대안2	기존 인력구성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교육 강화에도 불구하고 전문성 저하 교육을 위한 시간, 비용이 많이 소요 되겠지만, 이를 통한 전문성 확보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석면해체제거업자	석면해체제거 제도에 대한 온라인 간담회(21.8.20) 및 대면 간담회(22.4.14)를 통해 석면해체	우려	

	제거업자의 의견 수렴 -안전보건 자격자를 필수 인력으로 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전문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인정하나 비자격자가 대부분인 현실상 유예제도 등 보완책 필요하다는 의견		
--	---	--	--

###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석면해체제거업은 발암 물질인 석면을 취급하는 작업으로 엄격한 안전보건관리가 필수적임
  - 그럼에도 현재 인력기준은 산업안전보건 전문가와 토목건축 분야 기술자 중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건축 해체 작업에 익숙한 토목건축분야 자격자가 채용되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인력기준에 석면해체제거 작업자 및 인근 주민 등의 건강보호에 적합한 산업안전보건 자격자를 채용하도록 규정
  - 또한 산업안전보건 자격자의 인건비가 토목·건축 분야 기술자보다 더 높은 것도 아니고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이 없는 상황임으로, 규제대안1을 선택함

### 3. 규제목표

- 석면해체제거업자의 기본 인력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 자격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상 석면해체·제거에 따른 안전보건 규정을 준수토록 하여,
  - 석면·해체제거 작업자 및 인근 주민의 석면 노출을 방지하여 직업성 암 등을 예방하고 인근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 II.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석면해체·제거업체의 인력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 자격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경우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상 위험이 인정

되어 해체제거 업체의 인력, 시설 및 장비 기준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 인력기준에 산업안전보건 전문가를 포함하는 것은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안전성 확보와 직업성 질병 예방을 위한 합리적인 수단임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 영향평가

#### - 기술규제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 경쟁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없음

#### - 중기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 해외사례

· 해당사항 없음

#### ○ 타법사례

· 해당사항 없음

###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 요건 강화>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2	2022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 요건 강화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 Ⅲ. 규제 의 실효성

#### 1. 규제 의 순응도

#####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발암성 물질인 석면을 취급하는 석면해체·제거업에서 기본인력으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를 규정하는 것은 작업자 및 인근 주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당연히 갖추어야 할 기본적 사항이기 때문에 석면해체·제거업체의 반대 명분이 없으며,
- 현재 운영 중인 석면해체·제거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인력의 퇴사 전에는 현재 인력기준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었고 새롭게 등록하는 업체 및 현재 인력의 퇴사 시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피규제자가 준수할 수 있다고 판단됨

####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 행정적 집행가능성

- 석면해체제거업체의 인력 요건을 정하는 것으로 현재도 석면해체·제거업체의 인력 요건 등을 점검 등을 통해 확인하고 있는 사항으로 행정적 집행이 가능함

##### ○ 재정적 집행가능성

- 석면해체제거업체의 인력 요건 확인 시, 추가 재정이 소요되지 아니하므로 재정적 집행이 가능함

###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 광주 학동 붕괴사고('21.6월)와 관련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전문성 및 부실 작업이 드러나 이에 대한 개선 요구 발생
  - \* ▶ '21.6.24. 임이자 의원(환경노동위원회 中), “광주 학동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석면 페슬레이트로 인해 노동자, 광주 시민 건강 우려”
  - \* ▶ '21.6.30. 강은미 의원, 광주 사고로 본 재건축·재개발 문제와 안전사회를 위한 토론회 中 “다단계로 내려가면서 공사 비용 삭감으로 인한 안전조치 미흡 등이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적된다.”
- 이에 따라 관계부처(환경부)와의 협의를 통하여 광주 학동 사고 후속 석면해체·제거작업 제도개선(안) 마련(21.11월)

## 2. 향후 평가계획

- 해당 없음

## 3. 종합결론

- 석면해체·제거업체의 인력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 자격자 또는 토목·건축 분야 자격자 1인에서 산업안전보건 자격자 1인을 전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석면해체제거 작업자 및 인근 주민 등의 건강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별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2	2022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 요건 강화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

##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 <규제대안1 : 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 요건 강화>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직접비용

(정성)영향집단명	석면해체·제거업자												
활동제목	석면해체제거업 인력 기준 강화												
비용항목	노동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p>○ 현행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기준은 전담자 2명을 두어야 하며, 이 중 1명은 ①토목건축 분야 기술자격자 또는 산업안전보건 기술자격자가 석면해체제거 관리자 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며</p> <p>- 다른 1명은 ②공업계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자로서 토목·건축분야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후 석면해체제거 관리자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임</p> <p>○ 이번 개정에서는 전담자 1명을 산업안전보건 자격자로 한정하고 다른 한명을 토목·건축 분야 자격자 또는 실무경력자 중 한 명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p> <p>○ 즉, 석면해체·제거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토목·건축 분야 기술자나 산업안전보건 기술자 중에서 한 명을 채용해야 했던 것을 산업안전보건 기술자 1명을 채용하도록 하는 것으로</p> <p>- 21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비하여 토목건축분야 기술자의 인건비가 더 높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p> <p>* &lt;21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gt;</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건설(토목 등)</th> <th>기타(산업안전 등)</th> </tr> </thead> <tbody> <tr> <td>특급기술자</td> <td>308,530</td> <td>292,190</td> </tr> <tr> <td>고급기술자</td> <td>253,985</td> <td>247,580</td> </tr> <tr> <td>중급기술자</td> <td>231,775</td> <td>204,917</td> </tr> </tbody> </table> <p>(출처: 2021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정책연구실-329호, '21.12.6)</p>	구분	건설(토목 등)	기타(산업안전 등)	특급기술자	308,530	292,190	고급기술자	253,985	247,580	중급기술자	231,775	204,917
구분	건설(토목 등)	기타(산업안전 등)											
특급기술자	308,530	292,190											
고급기술자	253,985	247,580											
중급기술자	231,775	204,917											

② 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활동제목	석면해체제거업 인력 기준 강화
편익항목	산업재해 감소에 따른 간접 손실액 방지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산업재해 감소로 발생하는 피규제자의 산재보험료 감소액, 정부 및 피규제자의 재해손실비용, 부실한 석면해체작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일반국민의 불안감 해소 등과 같은 편익이 발생하나, 기업별로 각기 다른 비용을 일률적으로 산출할 수 없어 이를 정량화하기는 곤란